

대전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1015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상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3. 3.

판 결 선 고 2021. 4. 7.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단12752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충남 금산군 D 임야 48,793㎡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10. 15.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2018. 10. 15.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8.경 G조합의 C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G조합은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2620호로 2017. 1. 2. 기준 원리금 5,612,021원(원금 2,450,097원, 이자 3,161,92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14. 신청 내용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7. 3. 7.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한 충남 금산군 D 임야 48,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3 지분을 2018. 10.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지분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결과 그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동산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거나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위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C이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소유지분의 이전에 관한 C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정되고, 결국 C이 2018. 10. 15. 피고에게 위 소유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의 항변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과거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부친 H과 그의 동생 C을 비롯한 5인이 합유하였는데 합유자 중 H과 I가 사망한 후 남은 합유자 3명의 공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C은 H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지분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지분 이전에 대한 피고의 사해의사는 일응 추정된다. 비록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애초 피고의 부친 H과 E, I, F, C의 합유였다가 H과 I 사망 이후 2018. 10. 4. E, F, C의 각 1/3지분 공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2, 3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C의 친조카인 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위 임야의 소유관계가 공유로 변경된 지 10여일 만인 점, 등기부상 피고가 위 지분을 이전받은 등기원인은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의 2018년도 공시지가는 1㎡당 3,180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C의 소유지분 시가는 5,1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내역이라며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아들 J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깨트릴만한 선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C 소유지분 1/3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2018. 10. 15.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일자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세진, 판사 강지엽